

보도시점 2026. 9. 22.(화) 배포 즉시

실업급여 제도,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전매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21.(월) 아시아경제(온라인), “실업급여도 중국인이 다 싹쓸이?...외국인들 ‘역대 최대’ 1,134억 받아 갔다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42.2%(82.6만명)*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한 일하는 외국인은 29.9%(36.7만명)** 증가
 - * 체류 외국인(법무부): ('21년) 195.7만명 → ('25년) 278.3만명
 - * 취업 가능 비자 소지 외국인(법무부): ('21년) 122.9만명 → ('25년) 159.6만명
- 취업 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158.8%(28만명)* 증가
 - * 고용보험 외국인 피보험자 수(고용보험 DB): ('21년) 17.7만명 → ('25년) 45.9만명
 - 이와 함께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도 90.8%(844억원) 증가
 - * 외국인 가입자 고용보험료 부과액: ('21년) 929억원 → ('25년) 1,773억원
-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8.9%(1,368명)*, 지급액은 13.4%(134억원)** 증가한 수준에 그침
 - *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: ('21년) 15,421명 → ('25년) 16,789명
 - ** 외국인 구직급여 지급액: ('21년) 1,000억원 → ('25년) 1,134억원

- ☞ 외국인 수급자 증가 폭(8.9%)은 국내 취업 외국인(29.9%)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(158.8%)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
- ☞ 외국인 수급액 증가 폭(13.4%)도 외국인 납부 보험료 증가 폭(90.8%)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

□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 등에 견주어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남

○ '25년 기준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(172만명) 중 외국인(1.7만명) 비중은 1.0%, 전체 지급액(12.4조원) 대비 지급액은 0.9%(1,134억원) 수준

–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 비중은 지난 5년간 사실상 큰 변동 없이 줄곧 1.0% 이내 수준을 기록

*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외국인 비중: ('21년) 0.9% → ('25년) 1.0%

**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중 외국인 지급액 비중: ('21년) 0.8% → ('25년) 0.9%

○ 오히려 '25년 기준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는 비중은 1.9%로,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율(6.6%)보다 낮은 수준

☞ 지난 5년간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의 절대 규모는 일부 증가하였으나,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0% 이내 수준에서 정체

– 오히려 반복수급자 비율 등 일부 지표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

□ 한편,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한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수는 '25년 기준 74만명으로, 이 중 82.7%(61.2만명)는,

○ 취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,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정주형 체류자격인 영주F-5, 재외동포F-4, 결혼이민F-6 비자를 보유

○ 실제로 중국동포와 중국인 수급자의 90.4%는 영주F-5, 재외동포F-4, 결혼이민F-6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,

–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*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* '25년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85.4%(14.3천명)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. 3년 이상 가입자도 45.4%

□ 특히 이직 전 근무 사업장 중 이직이 빈번하고 고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건설업(28.8%), 숙박 및 음식점업(19.8%) 등 비중이 높은 점도,

* 내국인은 각각 13.5%(건설업), 6.6%(숙박 및 음식점업)

○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

- ☞ 중국동포·중국인의 경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정주형 체류자격 소지자 비중(82.7%)이 높고,
- 건설업, 숙박 및 음식점 등 고용변동성이 큰 업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점 등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높음
 - 다만, 취업 비자 소지자(74만명)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1.8%(1.3만명)으로 매우 낮은 수준

- 정부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권은 적극 보장하되,
- 구직급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과 부정수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
 -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표한 「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손성길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곽필순 (044-202-7371)

